

이 보도자료는 2019. 2. 10.(일) 14:00(2019. 2. 11.자 주간용)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 되는 범죄사실은 혐의일 뿐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인천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2차장검사 노정환
전화 032-861-5003, 팩스 032-860-4307

보도자료 2019. 2. 11.(월)

자료문의 : 공안부장실
전화번호 : 032-861-5009
주책임자 : 공안부장 민기홍

제 목

산업현장 공갈사범 3명 구속 기소 - 총 22개 현장, 1억 원 상당 갈취 등 -

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(부장검사 민기홍)는 전국 각지의 산업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1~2일 근무 후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산업안전조치 미흡,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·발을 제기한 다음 취하의 대가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반복해 온 일당 4명을 적발하여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
I 피의자 및 범죄사실 요지

- 피의자 : A○○ 등 4명(각 일용직 근로자)
- 죄 명 : 공갈, 공갈미수
- 범죄사실

- 피의자들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, '18. 1.~12.경 인천 수원 등 경기 강원 산업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 또는 이틀 일한 다음 곧바로 원·하청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또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·발을 한 후,
- 고소·발 취하 내지 합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7,700만원을 갈취하고, 4회에 걸쳐 합계 4,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

II

수사 경과

- '19. 1. 8. 검찰, 수사 착수
 - ※ 노동청 송치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발인들의 고소·발 송치사건이 작년 한 해 동안 총 137건에 이르고 업체에 금품 요구한 정황도 확인
 - ※ 피의자들은 동일 사업장에 대해 통상 작게는 2~3건, 많게는 12건까지 고소·발, 전체 고소·발 건수는 약 500여 건 이상으로 추정
- '19. 1. 26. 피의자 3명 구속
- '19. 2. 8. 피의자 총 4명 기소(3명 구속, 1명 불구속)

III

범행 수법

- 피의자들은 일용직 근로자 신분으로 공사현장에 나가 1~2일 일한 후 노동청에 해당 현장의 원·하청업체 상대로 경미한 혐의로 고소·발하고 이후 실무진과 접촉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 갈취하는 패턴을 반복함
- 산업현장 관리자들은 노동청 고소·발로 인한 형사처벌과 노동청의 공사현장 단속, 사내 인사조치 등의 각종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, 피의자들은 이를 악용한 것임
- 피의자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고소·발을 취하지 아니하고 고소·발인으로서 업체 측에 불리하게 진술하여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입게 할 태도를 보임으로써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였음
 - ※ 주요 공갈 사례
 - “고소 건으로 처벌받으면 안전관리자는 전과자가 되고 벌금이 나오며 원청한테 엄청 갈굼을 당할 것이다”
 - “1인당 과태료가 250만원씩 나오는 거 알고 있죠. 둘이 합하면 500만원이니 제가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알아서 주세요”

- “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가 출석해서 증거를 제출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손을 떠난다, 그렇게 하기 전에 결단을 내려라, ○○뉴스에서 인터뷰 하기 위해 우리를 만나자고 하는 상황이다. 고소장이란 것이 우리가 지금 가서 취하서를 제출하면 각하로 끝난다.”

- 피의자들은 합의금을 수령하면 고소 받을 취하하거나 노동청 조사에 출석 불응하는 방법으로 사건이 대부분 무혐의 종결되도록 함
- 특히 원청까지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켜 하청 실무자들을 압박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녹음에 대비하여 요구금액을 말로 하지 않고 핸드폰 화면에 입력하여 제시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하였음

IV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- 본건은 피의자들이 고소·고발을 제기하여 노동청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자신들이 고소·고발을 취소하거나 소환에 불출석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는 실태를 악용하여 고소·고발권을 남용한 사안임
-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호되어야 하나, 본건과 같이 업체들을 반복적으로 고소·발하여 금품 갈취하는 범행은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, 노사 불신 조장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범죄임
- 본건 범죄 혐의 포착한 후 곧바로 전국 각 청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기록들을 검토하는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피의자들의 지능적 계획적인 범행 전모를 밝혀내어 주범들을 구속하는 등 엄단함
-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피의자들의 악의적·반복적 고소·발을 인지하고도 일반 형법범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데, 향후 고용노동부에 본건 사례를 전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고소·발권을 남용하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엄단할 예정임 ☑